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출년월일 : 2001. 8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등을 위탁계약에 포함 하
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
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
- 다. 다음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이하, 일반시지역은 660㎡이하(읍면지역은 990
㎡이하),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적용에 탄력성 부여(안 제25조)
 - 일 반 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용·공공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경 작 용 : 재산평정가격의 1% ⇒ 1%이상

- 광업·채석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주 거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마.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안 제 25조제10항)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바.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8조제2항)
- 사.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대부재산의 기준, 용도, 전세금 산출방법, 예치 및 반환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의2)
- 아.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함(안 제31조제1항)
- 자.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안 제31조제2항)
- 차.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의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중개정조례(규칙) 표준안 시달(도 세정 13330-10993. 2001.4.12) 공문 사본 1부
- 나. 관련법령(발체) 1부
- 다. 입법예고결과 1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를 “법 제88조”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 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단,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2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재산”을 각각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동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동조 제7호 및 제8호중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0조의3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7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이상으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이상으로”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

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 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연 15퍼센트로 한다”를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25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p>	<p>제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88조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p>

현행	개정안
<p>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p> <p>⑤ <생략></p> <p>제8조(시 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삭제 2000. 1. 17></p>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p> <p>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p> <p>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p> <p>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p> <p>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단,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p> <p>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p>

현행	개정안
<p>제12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u>행정재산</u>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u>행정재산</u>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u>행정재산</u>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특별시·광역시지역 :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단, 읍·면 지역은 900제곱미터이하 토지)</p> <p>3. <u>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u></p> <p>④ <생략></p>	<p>제12조(관리 및 처분) ① ----- -----<u>행정재산·보존재산</u>----- -----</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①<u>행정재산</u>을 사용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p> <p>②<u>행정재산</u>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생략></p> <p>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생략></p>	<p>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u>행정재산·보존재산</u>----- ----- -----</p> <p>②<u>행정재산·보존재산</u>----- -----</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용허가 기간) <u>행정재산</u>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p>	<p>제14조(사용·수익허가 기간) <u>행정재산·보존재산</u>의 <u>사용·수익허가</u>----- -----<u>사용·수익허가</u>----- -----</p>
<p>제15조(사용허가 조건) <u>행정재산</u>을 사용 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p>제15조(사용·수익허가 조건) <u>행정재산·보존재산</u>을 <u>사용·수익허가</u>----- -----</p>

현행	개정안
<p>7.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 ~ ③ <생략></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중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한 때 <p>제25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③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p>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잠중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25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p> <p>-----</p> <p>-----1000분의 50이상-----</p> <p>-----</p> <p>-----1000분의 25이상으로-----</p> <p>②-----</p> <p>-----1000분의 10이상-----</p> <p>-----</p> <p>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현행	개정안
<p>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 2. <생략> ⑤ <생략>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시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재산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⑦ ~ ⑨ <생략> <신설></p>	<p>④----- ----- 1000분의 40이상-----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1000분의 25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1000분의 10이상-----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제2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① <생략>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p>	<p>제2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p>

현행	개정안
<p>③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점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p> <p>제26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 3. <생략></p> <p>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③ <삭제></p> <p>제26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p> <p>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5조의</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제28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p>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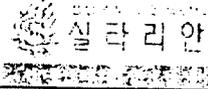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제29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 <삭제></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 자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29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29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 <삭제></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 자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주시재무회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29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관인생략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 (053)950 - 2333 / FAX (053)950 - 2339
세정회계과	과장 서재규 사무관 김성훈 담당자 박대훈

문서번호 세경 13330-10993

시행일자 2001.04.12 (5년)

공개여부 공개

(경 유)

발 음 시 장 · 군 수

참 조 회 계 (재무)과장

제 목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중 개정조례(규칙) 표준안 시달

1. 행정자치부 13330-199(2001. 3. 30)호의 이첩입니다.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중 개정조례(규칙)표준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아래사항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개정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가. 시·군에서는 표준안을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개정토록 하기 바라며,

나. 동 표준안의 각 규정중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뜻하고, 『도』는 시·군을 뜻하므로 개정안 작성시 용어를 바꾸어 개정

다. 동 표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여 정비하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 1부
- 2.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 1부 "붙".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서재규

○○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중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중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중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5조중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 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도지사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 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

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도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 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³⁴조의3에서 정한 세입 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 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도 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토지사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3항중 “하천법 제25”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사	유
<p>제5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별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천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별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조각함(제2항·제4항 관련)</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생략)</p> <p>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 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 영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p>				

현	개	사
<p>의 매수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계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p> <p>⑤(생략)</p> <p>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삭제 99.5.31></p>	<p>⑤(현행과 같음)</p> <p>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p> <p>-----</p> <p>-----</p> <p>-----</p> <p>-----</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 이 50퍼센트 이상 취득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p>	<p>○ 영 제78조제2항 신설 관련</p>

원	행	계	정	안	사	유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p> <p>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p>	<p>○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배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 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들 간 소화 하기 위함(제2호 관련)</p> <p>○ 조문정리(제11조제3항을 제7조제3항에</p>	

현	행	계	정 안	사	유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는 <u>행정재산</u>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u>환경을</u>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u>공유재산심의회의</u>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u>행정재산</u>·보존재산-----</p> <p>-----<u>행정재산</u>·보존재산-----</p> <p>-----<u>〈삭제〉</u>-----</p>	<p>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기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p> <p>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기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p> <p>다. 군지역(광역시외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기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p>	<p>○ 자귀수정</p> <p>○ 조문경리(제7조제2항 제3호에 포함)</p>		

현행	개정안	사유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특별시·광역시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p> <p>3. 군지역(광역시외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p> <p>4.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p> <p>④(생략)</p>	<p>③ <삭제></p> <p>④(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 -----</p> <p>-----</p> <p>-----</p>	<p>○ 조문정리(제7조제3항제3호에 포함)</p> <p>○ 자귀수정</p>
<p>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하여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㉔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략) 					
	<p>제13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p> <p>----- 사용·수익허가 -----</p> <p>----- 사용·수익허가 -----</p>				<p>○ 지켜수정</p>
	<p>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사용허가가 재산의 보존 의무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p>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사용·수익허가 ----- 8. 사용·수익허가 ----- 				<p>○ 지켜수정</p>
						<p>○ 제3호 내용과 중복 규정(제3호 내용으로 조치 가능)</p>

현	행	계	경	안	사	유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 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종채신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4. <u>도지사가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탈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u></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p> <p>-----</p> <p>-----</p> <p>-----</p> <p>-----</p> <p>1. ~ 3.(원행과 같음)</p> <p>4. <삭 제></p>	<p>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p>	<p>-----</p>	<p>-----</p>	<p>노력으로 투자유지를 한 경우만 적용도 록 함</p>	<p>○ 부칙규정에 2000.12.31까지 한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삭제(IMF기간동안 적용)</p>

현	개	사	행	정	안	유
<p>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증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5(생략)</p> <p>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 ~ ③(생략)</p> <p>④ 열 제 10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계산을 매각하는 때</p> <p>2. 인구 분산을 위한 경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5(현행과 같음)</p> <p>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④ 열 제 10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 생활보호법 폐지로 용어 정비</p> <p>○ 현행 제 1호 내지 제 4호 규정은 지방계정법시행령 제 100조 제 2항 제 1호 내지 제 4호 규정과 중복되고, 동 규정에서 연 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계산에 따라 탄력적 적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해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p>	<p>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증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5(생략)</p> <p>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 ~ ③(생략)</p> <p>④ 열 제 10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계산을 매각하는 때</p> <p>2. 인구 분산을 위한 경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5(현행과 같음)</p> <p>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④ 열 제 10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 생활보호법 폐지로 용어 정비</p> <p>○ 현행 제 1호 내지 제 4호 규정은 지방계정법시행령 제 100조 제 2항 제 1호 내지 제 4호 규정과 중복되고, 동 규정에서 연 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계산에 따라 탄력적 적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해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p> <p>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p> <p>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고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p> <p>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 1000분의 50이상 ----- ----- 1000분의 25이상 ----- ②----- -----1000분의 10이상-----</p>	<p>○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p>			

원	행	개	정	안	사	유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생략)</p> <p>②연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회맹자가 없이 2회이상 경정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p>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생략)</p> <p>② <삭제></p>	<p>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현행과 같음)</p>	<p>○ 영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채감) 도입(2000.10.20 개정)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p>		

현	영	개 정 안	사 유
<p>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지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간액조 정 할 수 없다.</p>	<p>③ <삭 제></p>	<p>○ 영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 도입(2000.10.20 개정)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 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 3(생략)</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 투자 -----</p> <p>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p> <p>-----</p> <p>-----</p> <p>1. ~ 3(현행과 같음)</p>	<p>○ 자취수정(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임대료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삭제)</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생략)</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현행과 같음)</p>		

원	행	개	정	안	사	유
<p><신 설></p>	<p>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분은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계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분하는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산</p>	<p>○ 공유계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분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분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p>	<p>○ 전세금 제도 도입(영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정함</p>		

현	행	계	정	안	사	유
<p><신 설></p>		<p>2.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된 계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계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축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하기 및 대부코자 하는 계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도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p>				

현	행	계	정 안	사	유
			<p>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자·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⁷⁴제4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자·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준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사유
<p>제26조(대부토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유재산의 대부로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 <삭제></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로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토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6조(대부토등의 납기) ①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의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 대부로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 조문정리(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함)</p>

원	행	개	경	안	사	유
<p>③(생략) <u><신설></u></p>		<p>③(현행과 같음)</p>	<p>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준용)</p>	

원	행	개	정	인	사	유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 ②(생략)</p> <p>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외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유허가를 받은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④(생략)</p> <p>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 ②(원행과 같음)</p> <p>③-----</p> <p>----- <u>하천법 제33조</u>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원행과 같음)</p> <p>④(원행과 같음)</p> <p>⑤-----</p> <p>-----</p> <p>-----</p>	<p>○ 하천법 개정에 따름</p>				

원	영	계	정	안	사	유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 분할매각-----				

관련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③ ~ ⑥ <생략>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산을 말하며, 제1항제4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④ ~ ⑤ <생략>

제84조의2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 ~ 15. <생략>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② ~ ⑤ <생략>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격결정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의 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같음할 수 있다.

2. 토지의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삭제 [99·4·30]

제92조의2 (대부료 등의 감면) ①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② <생략>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회

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⑦ <생략>

제100조의3 (잡종재산등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5조 (변상금)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② 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생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 9. <생략>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 3. 하천부속물의 점용
 -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 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 ② ~ ⑤ <생략>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4. <생략>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6. <생략>

입 법 예 고 결 과

- 조 례 명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게시판 게시 및 영주시보 제299호(2001
년 7월 2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1년 7월 2일 ~ 2001년 7월 23일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212호
- 의안명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2. 제안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
- 다. 다음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이하, 일반시지역은 660㎡이하(단, 읍·면지역은 990㎡이하),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적용에 탄력성 부여(안 제25조)
 - 일 반 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용·공공용 : " 2.5% → 2.5%이상
 - 경 작 용 : " 1% → 1%이상
 - 광업·채석용 : " 5% → 5%이상
 - 주 거 용 : " 2.5% → 2.5%이상

- 마.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안 제25조제10항)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바.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8조제2항)
- 사.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대부재산의 기준, 용도, 전세금 산출방법,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의2)
- 아.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함(안 제31조제1항)
- 자.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안 제31조제2항)
- 차.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의2)

4. 검토의견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2항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함.
 - 안 제8조(시공유재산심의회)제2항 제2호, 제3호 신설
 -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과
 -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함.

- 안 제8조제3항(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 다음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30㎡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 일반시 지역은 660㎡이하 토지(단, 읍·면지역은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 군 지역은 990㎡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 안 제25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 적용에 탄력성 부여)
 - 일반용 :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 1000분의 50이상,
 - 공용·공공용·취락 개선사업용 :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 1000분의 25이상,
 - 경작용 :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 1000분의 10이상,
 - 광업·채석용 :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 1000분의 50이상,
 - 주거용 :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이 25 → 1000분의 25이상,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000분의 10이상
- 안 제25조제10항 신설
 -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 1000분의 10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
- 안 제28조제2항 신설
 -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함

- 안 제28조의2 신설
 -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대부재산의 기준·용도·전세금 산출방법·예치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31조제1항
 -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 안 제31조제2항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
 - 안 제31조의2 신설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2001. 4. 1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1. 9.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